

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
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-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·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함
- 이에 주택재개발을 통한 노후·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
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)

3. 정비계획 결정(안)개요

- 위 치 : 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
- 면 적 : 40,018㎡(12,105평)
- 용도지역/지구 : 제3종일반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
- 신청자 :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
추진위원회

4. 검토의견

■ 본 의견 청취의 건은

- 건축년도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.불량주택이 밀집한 부산 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
-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대감각에 맞게 취락구조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
-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생애적이고 토속적인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필요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
- 특히 주택재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2005. 9. 21. 부산시고시 제2005-267호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므로

■ 위 의견 청취의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

따라서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